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구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노1464 판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모욕

대 구 지 방 법 원

제 3 - 2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21노14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괸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 음란), 정보통신

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정인혜(기소), 이웅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정법 담당변호사 정이훈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 4. 28. 선고 2021고정12 판결

판결선고 2021. 10.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및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1.항 8행중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2019. 8. 13.부터 2019. 8. 18.까지'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20. 5. 19. 법률 제17264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의 점),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종류와 내용, 범행과정,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제한을 명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위 파기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최운성(재판장) 성경희 이영철